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162
------------	--------

제출년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살아온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3. 26.)되었고, 시행(2026. 3. 27.)을 앞두고 있음. 이에,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돌봄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역할과 구민의 참여(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역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사업추진 절차(안 제6조 ~ 제9조)
- 마. 통합지원 기반조성(안 제10조 ~ 제12조)
- 바. 통합지원협의체(안 제13조 ~ 제18조)
- 사. 기타 규정사항(제19조 ~ 제24조)

3. 주요 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6. 제정, 2026. 3. 27. 시행)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10. 2. ~ 10. 22.

- 마포구 약사회 의견제출(2025. 10. 17.)

의견제출사항	반영여부	조치내역
제1조(목적) ‘의료’를 ‘ <u>보건의료</u> ’로 변경요청	반영 (의료 → 보건의료)	(2025. 10. 21) 타 구 조례 현황 확인 (2025. 10. 2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해당 법령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 - ‘보건의료’ 용어 사용 가능 답변받음 - ‘약물관리’는 「약사법」에서도 사용하지 않아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조례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권고 (2025. 10. 22.)
제7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1항제1호 ‘방문진료·간호 등’을 ‘방문진료·간호· <u>약물관리</u> 등’으로 변경요청	법률용어로 변경 반영 (간호 등 → 간호· <u>복약지도</u> 등)	보다 포괄적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 변경 반영하고, 법률용어로 보기 어려운 ‘약물관리’는 구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복약지도’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해당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이 마포구 약사회장에게 유선으로 통보(2025. 10. 22.)

-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의 용어 통일을 위해 변경하고자 함
 - 제8조제2항: ‘의료, 요양’ → ‘보건의료, 요양’
 - 제10조제1항제1호: ‘의료, 요양’ → ‘보건의료, 요양’
 - 제20조: ‘의료, 요양’ → ‘보건의료, 요양’
 - 제23조: ‘의료, 간호’ → ‘보건의료, 간호’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

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와 상호협력의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합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신청 및 대상자 발굴)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은 구청장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 조사, 조사결과 분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

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한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구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구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지원 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하거나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3조(통합지원 기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多學際)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7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21조(교육 및 홍보)
 -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조례안 제21조제3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강윤아
연락처	02-3153-8835